

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③ 신성장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,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 인정 신청 여부	예[] 부[]	미신청 투자금액 합계
④ 신성장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,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 인정 신청 인정 여부	예[] 부[]	미인정 투자금액 합계
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여부	여[], 부[]	
⑥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(=②① + ②⑥)		

가.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 (=①⑦)

⑦ 투자종류	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 (사용, 미사용)	⑨ 총 투자 예정 금액	⑩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	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				⑮ 누적투자 대상금액 (⑩와⑭ 중 큰 금액)	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	⑰ 투자 금액 (⑮ - ⑯)
				⑪ 해당 과세연도말 총 투자 누적액	⑫ 총 투자 예정 비	⑬ 진행률 (⑪/⑫)	⑭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(⑨×⑬)			
계										

나. 그 외 투자금액 (=①⑧)

투자종류	①⑧ 투자금액
일반시설	
신성장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	⑧이 '사용'인 시설 ⑧이 '미사용'인 시설
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	⑧이 '사용'인 시설 ⑧이 '미사용'인 시설
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	⑧이 '사용'인 시설 ⑧이 '미사용'인 시설
계	

다. 기본공제금액 (=②①)

투자종류	①⑨ 공제대상 투자금액 (=①⑦+①⑧)	②② 공제율	②③ 기본공제금액 (=①⑨×②②)
일반시설		1%, 5%, 7.5%, 10% (1%, 7%, 12%)	
신성장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	⑧이 "사용"인 시설 ⑧이 "미사용"인 시설	3%, 6%, 9%, 12% (3%, 8%, 14%)	
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	⑧이 "사용"인 시설 ⑧이 "미사용"인 시설	15%, 15%, 20%, 25%	
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	⑧이 "사용"인 시설 ⑧이 "미사용"인 시설	20%, 20%, 25%, 30%	
합계			

라. 추가공제금액 (=㉔)

투자종류	㉔ 공제대상 투자금액 (=㉑)	㉕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	㉖ 초과액 (=㉔-㉕)	㉗ 공제 율	㉘ 추가공제금액 Min[(㉔×㉗), (㉕×2)]
일반시설					
신성장사업화시설·연구 개발시설	㉙이 "사용"인 시설			10%	
	㉙이 "미사용"인 시설				
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·연구개발시설	㉙이 "사용"인 시설				
	㉙이 "미사용"인 시설				
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	㉙이 "사용"인 시설				
	㉙이 "미사용"인 시설				
합계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1. 1. 1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, 제25조, 제25조의4,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(이하 "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).

- "㉗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제1항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"여"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"부"를 적습니다.
- "㉙ 투자종류"란: 일반시설 투자금액, 신성장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,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 및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 신성장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6에 따른 신성장·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·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,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·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며,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은 반도체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을 말합니다.
- "㉚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"란: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이거나 해당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"사용"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"미사용"을 적습니다.
- "㉛ 진행률"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.
- "㉜ 누적투자 대상금액"란: ㉛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㉛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, ㉜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.
- "㉝ 공제대상 투자금액"란: 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㉛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"㉞ 공제율"란: 일반시설란 및 신성장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하며,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은 7.5%, 신성장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은 9%,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은 20%,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·연구개발시설은 25%의 공제율을 적습니다.
- "㉟ 공제대상 투자금액"란: ㉝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.
- "㊱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"란: [(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÷3) × (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÷12)]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㉘ 추가공제금액의 합계는 ㉖ 초과액의 합계에 공제율(10%)을 곱한 값과 일치해야 하며, ㉘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